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10.18.)

# 조 례 및 일 반 의 안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 2.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용역결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활용하고, 법령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 배열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법제처 입안기준의 위원회 규정순서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정비함.  
(안 제3조~제10조)
  - ☞ 위원회 설치→기능→심의대상→구성→임기→해촉→제척·기피·회피→위원장 직무→회의
- 나.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 ☞ 위임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단어를 순화함.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법제처 입안기준의 위원회 규정순서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정비하는 것임.
- 나. 또한,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28358호, '17.10.17.)됨에 따라
- 다. 우리군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
- 라.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9년도('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局)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국(局)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2국(局)을 설치하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 나. 지역현안과 행정수요에 맞추어 담당관을 설치하고 과를 조정함.
- 다. 기구 조정
  - 1) 당초 : 2실·11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2읍·면
  - 2) 조정 : 2국·1담당관·14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2읍·면
- 라. 정원 총수 조정
  - 1) 정원 총수 : 679명 ⇒ 702명(증 23)
  - 2) 집행기관 정원 : 665명 ⇒ 688명(증 23)

#### 마.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1) 일반직 5급 정원 : 35명 ⇒ 38명(증 3)

가) 현행 : 35명(본청11명, 의회3명, 직속기관5명, 사업소4명, 읍1명, 면11명)

나) 조정 : 38명(본청15명, 의회3명, 직속기관5명, 사업소3명, 읍1명, 면11명)

2)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608명 ⇒ 628명(증 20)

가) 현행 : 608명(본청268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나) 조정 : 628명(본청300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37명, 읍39명, 면140명)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8661호, 2018.2.20)으로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 1개 이상 3개 이하의 범위에서 국 설치가 가능하고, 기존 과 설치기준이 삭제됨.

나. 제43대 군수 공약사항과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을 설치하고, 국 설치에 따른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별도 설치함.

다. 아울러 과 설치기준 삭제에 따라 유사중복 기구는 통폐합하고 인구정책, 도시재생, 치매안심센터, 창포원, 정수장 등 새로운 수요가 있는 업무는 담당을 신설,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직제와 연관성이 있도록 부서 명칭과 직제를 조정함.

- 라. 조직개편 결과, 현행 2실 11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2개 읍면을 2국 1담당관 14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2개 읍면으로 개편하여 민선7기 군정철학을 바탕으로 군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 마.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지방분권시대 자체 실정에 맞는 최적의 조직을 마련하여 핵심 및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 바.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 2. 개정이유

-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사용방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등 이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상위법령 준용조항 삭제함.(안 제10조제3항)
- 나. 연가 사용 장려를 위하여 연가제한 사유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 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 1) 지참 ⇒ 지각
- 2) 행안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 라.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휴가 사용방법 개선함.(안 제23조제11항)

- 1) 분할 사용횟수 : 한 번 ⇒ 세 번
- 2)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 10일 ⇒ 20일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상위법령 준용조항은 삭제하고,
- 나.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한 연가사용 제한조항 수정 및 삭제, 공무원 임용 변화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확대 및 시행방법 개정은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것임.
- 다.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 2. 개정이유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군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변경함.(안 별표 2)

현행	1건 1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1메가바이트 초과 시 1메가바이트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변경	무료. 다만. 전자파일로 변환 시에는 기존 수수료 그대로 징수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 나.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 12. 21)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 다.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 2. 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 12. 29.)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중복 재 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설공원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함.

☞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나. 조례로 위임된 위임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공설공원묘지의 설치와 명칭 등을 규정함.(안 제2조·별표 1)

라. 공설공원묘지 사용 대상자 명확히 규정함.(제3조)

(현행) 장묘시설 소재지 읍·면을 제외한 타지역 거주자 사용제한

(변경) 사망 시 거창군에 주소를 둔 경우만 사용

공설공원묘지 소재지 읍면이 아닌 관내 다른 지역 거주자 사용제한

- 마.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감면 기준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별표 2)
- 바. 조례로 위임된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 기간 단축 시 15년, 20년, 25년 중의 기간에서 단축 가능하도록 정함.(안 제6조)
- 사. 유골과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둠.(안 제7조, 별표 3)
- 아. 분묘의 형태, 구조, 석물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자. 위탁운영, 읍·면 위임사무 규정함.(안 제9조·10조)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국토의 잠식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묘지관리의 애로 등 구조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8개소의 공설공원묘지를 위탁관리하고 있음.
-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60호, 2015. 12. 29.)됨에 따라 개정 내용인 분묘의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신청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공설공원묘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다. 하지만, 공설공원묘지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남상공설공원묘지의 경우 1.1%, 월평공설공원묘지 2%, 가북공설공원묘지 3.83%로 매우 저조한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 라.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마.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 2. 제정이유

-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
- 나.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임기 2년
- 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 직무 등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정책이나 사업에서 나타나는 성적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는 것임.
-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행하도록 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 다. 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 2. 제정이유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대상자를 정함.(안 제2조)

- ☞ 수급자·한부모가족 아동,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아동, 보호자가 없는 가구 아동,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

나. 급식지원 방법을 정함.(안 제3조)

- ☞ 단체급식, 음식점을 통한 급식, 도시락, 식재료 지원 등

다. 급식지원 신청절차,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등을 정함.  
(안 제4조~제7조)

라.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정함.(안 제8조~제14조)

마. 위생·안전 교육 등을 정함.(안 제15조)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
- 나.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아동 급식지원 표준조례안 (2017.4.20)」에 기초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비율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다. 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 2.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조례로 위임된 범위로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중복·재기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실내체육관 명칭 변경함.(안 제2조)

☞ (현행) 실내체육관 ⇒ (변경) 거창군 체육관

나. 국민체육센터 탁구장 운영시간 변경함.(안 제6조)

☞ (현행) 오전 10시~오후 12시 ⇒ (변경) 오전 10시~오후 10시

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규정 보완함.(안 제8조)

- 1) 체육시설 본연의 용도인 체육행사를 우선허가 하도록 정비
- 2)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우선순위 변경 가능 조항 신설

라. 정치나 종교의 목적으로 체육시설 사용 시 제한규정 신설함.(안 제9조)

마. 관람수입의 사용료 납입 규정 정비함.(안 제13조, 제14조)

☞ 관람료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법령 근거 없이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삭제함.

바. 사용료 감면조항 정비함.(안 제15조, 별표 2)

- 1) 법령 위임 없는 면제조항 삭제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 2) 100분의 50 감면조항 신설 :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세대 내 18세 이하 자녀 등

사.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1)

☞ 수영장 강습회원 강습비, 볼링장 사물함 사용료 별도

아.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업무 위임규정 신설함.(안 제23조)

자. 그 밖에 법령 재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를 순화함.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각종 체육시설은 군민들의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임.

나. 거창군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취약계층인 장애인 우선 사용 규정을 제정하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에 맞추어 다자녀 감면 규정을 신설, 사용료 면제 사항을 제한함으로써 타 민간단체 행사 등과 비교할 때 상위법령에 대한 특례소지를 개선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임.

다.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 가. 제안이유

- 1) 거창군종합사회복지회관은 어린이집, 장난감은행 등의 공공시설 운영으로 일일 상시 이용객이 200명 이상 되고, 회의실 대여에 따른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회의시에는 일일 500명 이상 사용하는 등 이용객수에 비해 주차공간(24면)이 턱없이 부족함.
- 2)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나. 추진경과

- 2018. 9. : 주차장 확장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2018. 9. : 토지소유자 매도 의사 확인
- 2018. 9. : 공유재산심의회

다. 취득 개요

- 사업위치 : 거창읍 중앙리 333-1번지 일원
- 면 적 : 1,008m<sup>2</sup>
-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40면 이상)

라. 취득재산 세부내용

(단위 : m<sup>2</sup>,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재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				1,008	472,550	
매입	토지	거창읍 중앙리 333-1	대지	995	466,456	송 * 섭
매입	토지	거창읍 중앙리 333-15	대지	13	6,094	송 * 섭
매입	건물	거창읍 중앙리 333-1	-	585.6	184,590	송 * 섭

※ 기준가격 : 토지 - 공시지가(468,800원/m<sup>2</sup>) × 면적(m<sup>2</sup>), 건물 - 시가표준액

마. 위치도 및 현장사진



###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군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패러다임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나. 각종 행사나 교육 또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군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인근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주차능력 24대
- 다. 종합복지시설로서의 충실한 역할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연접 부지를 매입하여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은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 2. 요구이유

- 노인·여성·장애인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통합복지시설인 쉼터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 삶의 쉼터의 운영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거창군 삶의 쉼터
-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1(송정리 941-1)
- 다. 규모 : 대지 15,057㎡, 건축면적 2,206.3㎡, 연면적 5,508.99㎡
  - 노인·여성복지관 : 3,009.31㎡, 장애인복지관 2,499.68㎡
- 라. 사업내용 : 거창군 삶의 쉼터 운영



마. 위탁대상 사무

- 시설 : 거창군 삶의 쉼터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 운영 : 노인과 여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바. 위탁기간 : 2019.1.1. ~ 2023.12.31.(5년)

사.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아.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자. 소요예산

- 시설운영비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 지원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
- 나. 거창군 삶의 쉼터는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설치한 거창군노인복지관, 거창군여성복지회관, 거창군장애인복지관을 통칭하여 말함.
- 다. 우리군에서도 장애인근로사업장, 월성청소년수련원, 문화원, 전수관, 서북부경남거점APC산지유통센터, 천적생태과학관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라. 따라서 복지시설 민간위탁은 복지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위탁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 2. 요구이유

-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 나. 위탁대상 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채용 및 관리
  - 여성결혼이민자 상시고용 : 연간 5 ~ 10명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 준수하여 근로계약 체결
  - 근무내용 : 결혼이주여성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
  - 월 급여 : 1인당 월 근로임금 50만원 이내 채용 장려금 지급 (위탁금), 그 외 임금은 수탁기관 부담

- 다. 수탁기관 가격기준 : 4대 보험 가입하는 기업체 또는 법인
  - 연중 5~10명 정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상시채용과 관리가 가능한 기관
-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 마.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 이동이 상시적,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결혼을 통한 여성 이주가 현저히 증가되고 있음.
- 나. 2018년 8월말 현재 우리군 여성인구수는 32,211명이고, 여성 결혼이민자는 322명으로 여성 인구대비 1%를 차지하고, 베트남 여성이 131명, 중국 70명, 캄보디아 39명, 필리핀 27명, 기타 55명 순임.
- 다. 군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 지역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회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라. 해당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밀착형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직업교육 기회 제공 등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마.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여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업 및 법인에게 민간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 2. 제안이유

- 2019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3.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 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나.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대표 정성훈)
- 다. 사업비 : 4,012천원

- 2019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지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19년	3,700	4,012	4,012			4,012	

라.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해당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음.

나. 지방세 연구와 지방세법 해석,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 2. 제안이유

-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 3. 출연개요

- 가.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나. 대 상 :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다. 사업비 : 665,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9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9년	665	665	665			665	

- 라. 사업내용: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 나. 교육도시 거창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